공고 제 44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

전농제2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락	장 *락 1961-04-06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(전농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11-12